

TRADE & ORIGIN REPORT



04

해외통상애로

국내 제조기업의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안내





국내 제조기업의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안내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



1. 인트로

2026년 1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본격 시행단계인 확정기간이 시작된다. 준비기간이었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엔 관세 부담 뿐만 아니라 검증, 수입 자격 취득 등 다방면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6년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지만, 2026년에 대한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약 1년 9개월의 준비 기간이 남아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EU CBAM 입법 일정, 확정기간 달라지는 점, 수출유형별 국내 제조기업의 확정기간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국내 제조기업이 확정기간 EU CBAM 대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 EU CBAM 입법 일정

2023년 EU CBAM 기본법인 ‘CBAM 규정(EU) 2023/956’과 ‘전환기간 이행규정’이 채택되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이 시행되었다. 당초 확정기간과 관련된 이행규정과 위임규정이 2025년에 순차적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2월 규제 간소화 및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인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되면서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기본법 ‘CBAM 규정(EU) 2025/2083’이 2025년 10월 채택되면서 관련 하위 규정의 채택이 2026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8개의 이행규정과 1개 위임규정을 관보게재하였다. 국내 기업은 배출량 산정 방법과 무상 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과 벤치 마크와 관련된 ‘무상할당의 조정 이행규정’은 2025년 12월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에 기존 6개 품목 하위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 여부, 우회방지 조치 및 전력배출 규칙을 발표하였다.

구분	기 채택	개정 또는 신규 채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5) 규정(EU) 2023/956 	<p>→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0) 규정(EU) 2025/2083
이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8) 이행규정(EU) 2023/1773 • (2024.12) CBAM 등록부 이행규정(EU) 2024/3210 • (2025.3) CBAM 신고인 승인 이행규정 (EU) 2025/486 	<p>→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2) CBAM 등록부 이행규정(EU) 2025/2550 → • (2025.12) CBAM 신고인 승인 이행규정(EU) 2025/2549 <p>〈신규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0) 대륙붕과 EEZ 이행규정(EU) 2025/2210 • (2025.12)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EU) 2025/2547 • (2025.12) 검증인의 인정과 검증 원칙 이행규정(EU) 2025/2546 • (2025.12) CBAM 인증서의 가격 이행규정(EU) 2025/2548 • (2025.12) 세관당국의 수입에 대한 정보 전달 이행규정(EU) 2025/2619 • (2025.12) 무상할당의 조정 이행규정(EU) 2025/2620 • (2025.12)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구분	기 채택	개정 또는 신규 채택
이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 상반기 예정) 기지불 탄소가격 이행규정 (2026 상반기 예정) CBAM 신고서 이행규정
위임 규정	-	〈신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11) 인정과 검증인의 조건 위임규정(EU) 2025/2997 (2025.12 예정) CBAM 인증서의 구매와 환매 조건 위임규정

3. 확정기간 달라지는 점

전환기간 대비 확정기간 달라지는 점을 아래 표에 비교하였다. 대상품목은 6개로 변화가 없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기준 품목 하위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를 발표할 계획이라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기간	2023.10.01. ~ 2025.12.31.	2026.01.01. ~
대상 품목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CBAM 규정 부속서 I'에 대상 CN코드 제시)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2025년 12월 채택 예정)
의무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간 EU CBAM 방법 • non EU 방법(- 2024년 12월) • 추정 방법(- 2025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간 EU CBAM 방법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배출 보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 직접 배출 보고: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배출 보고: 비료, 시멘트 • 직접 배출 보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량: 실제값 또는 확정기간 기본값 (- 2024년 7월) • 연 1회 CBAM 신고서를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인증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 CBAM 인증서 제출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AM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에 대해 10~50 EUR/tCO₂e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CBAM 신고인: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약 100 EUR/tCO₂e 부과. CBAM 인증서 별도 제출 • 승인되지 않은 수입업자: 50톤 초과 수입 시 약 300~500 EUR/tCO₂e 부과. 단, 55톤 이하 수입 시 단가 감경 가능. CBAM 인증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전환기간엔 4개의 의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보고 의무만 있었던 반면, 확정기간엔 산정, 보고, 검증,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의무의 주체는 CBAM 신고인(EU 역내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기업은 CBAM 신고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검증에 대한 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전환기간엔 별도의 자격 취득없이 CBAM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었으나, 확정기간엔 CBAM 등록부에서 승인 신청을 통해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CBAM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2025년 10월 CBAM 규정이 개정되어 연간 단일 중량 임계값(single mass-based threshold)인 50톤 이하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CBAM이 면제된다. 따라서 EU 역내에서 수입통관까지 담당하는 국내기업은 CBAM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 놓아야 한다. CBAM 규정 제17조제7a항에 따라 2026년 3월까지 승인 신청을 완료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CBAM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다.

확정기간 CBAM 신고인의 첫 번째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전환기간엔 non EU방법, 추정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었지만, 확정기간엔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방법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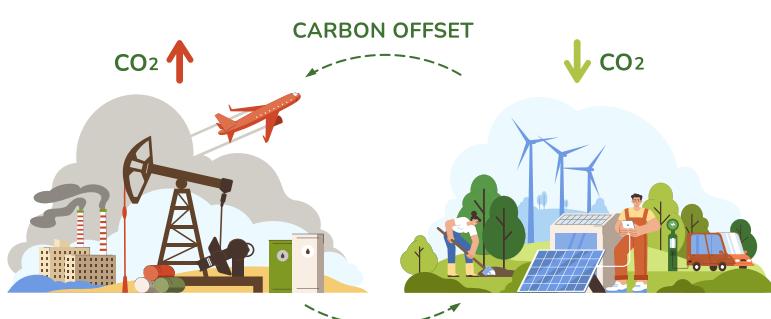


산정범위가 달라졌는데, 확정기간엔 비료와 시멘트만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산정·보고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에 대해서는 직접 배출량만 산정·보고한다. 한편, CBAM 규정 개정에 따라 CBAM 대상 시스템 경계가 EU ETS에 포함되는 범위와 정합성을 이루도록 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두 번째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이다. 확정기간엔 실제값과 확정기간 기본값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연단위로 CBAM 등록부를 통해 차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기본값 사용 시 마크업이 적용되어 실제값 대비 CBAM 인증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실제값을 사용하는 것이 국내 수출기업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검증 의무이다. 실제값으로 보고할 때만 검증이 필요하며, 기본값 사용 시 검증은 면제된다. 전환기간엔 단순 보고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활 시 자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확정기간엔 실제값에 따라 CBAM 인증서 수량이 결정되므로 검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EU 국가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으로부터 연 1회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은 CBAM 등록부를 통해 검증보고서를 직접 제출한다.

네 번째, CBAM 신고인은 산정된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2027년 2월부터 EU ETS 종가의 주간 평균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2026년에 대한 CBAM 인증서는 예외적으로 EU ETS 종가의 분기별 평균가격으로 구매·제출한다.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계산 시 제3국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인정받아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3국 사업자가 직접 산정해 제3자로부터 인증받아야 했으나, CBAM 규정 개정으로 직접 산정한 기지불 탄소가격 또는 EU 집행위가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할 국가·CN코드별 기본 탄소가격(default carbon price)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간에 승인된 CBAM 신고인이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 100유로/tCO₂e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CBAM 인증서는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이보다 3~5배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EU 역내 수입까지 담당하는 국내 기업은 임계값 초과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정확한 CBAM 인증서 수량을 제출해 과징금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4. 수출유형별 국내 제조기업의 확정기간 대응 방법

CBAM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은 다음 표와 같이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1 기업은 국내 수출 뿐만 아니라 EU 역내 수입 통관도 담당하는 기업, 유형 2 기업은 국내 수출만 담당하는 기업, 그리고 유형 3 기업은 EU로 간접 수출하는 기업이다. 유형 1과 유형 2 기업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해 수출하는 무역업 기업과 직접 제조하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하 본문은 제조기업에 초점을 맞춰 확정기간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분	유형 1. 국내 수출 + EU 수입 통관 기업	유형 2. 국내 수출 기업	유형 3. EU 간접 수출 기업
정의	국내 수출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을 통해 EU 역내 수입까지 담당하는 기업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CBAM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관련 전구물질 또는 CBAM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업무	직접 생산	O or X	O
	수출신고	O	X
	수입신고	O	X

〈유형 1 제조기업〉

연간 단일 중량 임계값(50톤)을 초과해 EU 역내로 수입하는 유형 1 제조기업은 우선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CBAM 상품을 수입하는 보고 연도(N년)에는 국내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전구물질 제조업체로부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 정보를 확보하고, 자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량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U에서는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분기별 예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BAM 신고서를 제출하는 연도(N+1년)에는 국내에서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해 CBAM Operator 포털에 입력하고, EU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EU에서는 CBAM Operator 포털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CBAM 신고인 포털에서 CBAM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CBAM 인증서와 함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형 2 제조기업〉

유형 2 제조기업은 우선 EU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의 EU 수입 CN코드와 수입업자의 연간 CBAM 상품 수입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사 수출품이 CBAM 대상에 해당한다면 유형 1 제조기업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즉, N년에는 전구물질 정보 확보 및 자사 내 연·원료 투입량, 생산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차년도(N+1년)에는 CBAM 신고인에게 사업장과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정보 제공 시 CBAM Operator 포털뿐만 아니라 communication template 등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다.

〈유형 3 제조기업〉

유형 3 제조기업은 자사 제품을 구매한 국내 혹은 해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정기간에 실제값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CBAM 인증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유형 3 제조기업은 자사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수준과 검증 비용을 평가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확정기간 EU 내에서 EU ETS 무상할당이 감소함에 따라 EU ETS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곧 CBAM 인증서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 또한, 시간이 지남수록 CBAM 벤치마크 및 CBAM 계수가 단계적으로 감소하면서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역시 증가하게 된다. 즉, 확정기간 CBAM 인증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제조기업은 CBAM 상품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CBAM 대응에 있어 실제값 사용이 유리한 만큼,

기업 내부의 MRV 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기업 간 배출량 정보 교환과 같은 협력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5. 결론

CBAM의 본격 시행은 국내 제조기업의 MRV 체계와 공급망 관리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전환기간에는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확정기간에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인증서 제출까지 전 과정이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특히 실제값에 기반한 보고가 CBAM 인증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업장 내 MRV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구물질 제조업체 및 판매처와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단위의 대응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축소와 CBAM 벤치마크·CBAM 계수의 지속적 감소는 향후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비용과 수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비용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을 의미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 개선,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구조적 감축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EU CBAM 뿐만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에코디자인의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탄소·환경 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은 이러한 변화된 글로벌 환경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유형별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EU CBAM 확정기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